

국가유산수리 간접노무비 계산방법

1. 직접계상방법

가. 계상기준

계약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.

$$* \text{간접노무비} = \text{노무량} \times \text{노무비단가}$$

나. 계상방법

- (1) 노무비단가는 「통계법」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·공표한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수당, 상여금, 퇴직급여충당금은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.
- (2)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.
- (3) 간접노무비(현장관리인건비)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, 현장사무원(총무, 경리, 급사 등), 기획·설계부문종사자, 노무관리원, 자재·구매관리원, 공구담당원, 시험관리원, 교육·산재담당원, 복지후생부문종사자, 경비원, 청소원 등을 들 수 있다.
- (4) 노무량은 국가유산수리의 규모·내용·공종·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서(설계도면, 지방서, 현장설명서 등) 상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원을 설계 반영 처리한다.

2. 비율분석방법

가. 계상기준

계약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반영하고,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.

$$* \text{간접노무비} = \text{직접노무비} \times \text{간접노무비율}$$

나. 비율분석방법에 따른 간접노무비율

수리규모*	수리기간	간접노무비율 (%)
5천만원 미만	6개월 이하(183일)	13.1
	7~12개월(365일)	12.6
	13~36개월(1095일)	11.6
	36개월 초과(1096일)	10.8
5천만원 이상 1억 미만	6개월 이하(183일)	11.9
	7~12개월(365일)	11.4
	13~36개월(1095일)	10.4
	36개월 초과(1096일)	9.6
1억 이상 5억 미만	6개월 이하(183일)	11.6
	7~12개월(365일)	11.1
	13~36개월(1095일)	10.1
	36개월 초과(1096일)	9.3
5억 이상	6개월 이하(183일)	11.4
	7~12개월(365일)	10.9
	13~36개월(1095일)	9.9
	36개월 초과(1096일)	9.1

* 수리규모 = 재료비+직접노무비+산출경비